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30

발의연월일: 2020. 6. 29.

발 의 자:김예지·박덕흠·구자근

엄태영 · 김석기 · 이종성

김태흠 • 하태경 • 강기윤

강대식 · 정진석 · 이명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(이하 "시각장애인시설"이라 함)은 비영리를 목적 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·배포 또 는 전송할 수 있음.

그러나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저작물이 증가하고 있고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, 이러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

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, 이러한 점자·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·배포·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(안 제33조제2항). 법률 제 호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 중 "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·배포 또는 전송할수 있다"를 "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, 이러한 점자·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·배포·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3조(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 제33조(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 제 등) ① (생 략) 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(당해 시 설의 장을 포함한다)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 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<u>공표된</u>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는 시각<u>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</u>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 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기록방식으로 복제·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.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, 이러한 점자・ 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 용할 수 있도록 복제・배포・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